■ 치과 칼럼

노화와 치아 건강

초고령화 추세에 따라 65 세 이상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30년 미국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 % 인 7,200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00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화에 따른 치아 건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졌습니다. 노화로 인해 치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는 구강건조증을 비롯해 치근충치, 치주염, 치과 마취제를 포함한 진통제에 대한 예민한 반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Xerostomia)은 65 세 이상에서는 30%, 80 세 이상에서는 40% 정도의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는 대부분 처방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입니다. 물론 당뇨병, 알츠하이머, 또는 파킨슨 질환 등의 합병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하루에 4 종류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는 사람일수록 구강건조증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구강건조증은 점막염(mucositis), 충치, 입술 갈라짐(cracked lips) 그리고 균열된 혀(fissured tongue)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입안건조증은 물을 최대한 자주 마시고 쥬스나 커피, 술 등 당분이나 카페인, 알코올 등이 포함된 것들을 삼가해야 증상이 완화됩니다.

다음으로는 치근충치(root caries)입니다. 이는 처방약 부작용으로 인한 구강건조증과 잇몸이 내려가는 gingival recession으로 뿌리가 노출되고 외부에 노출된 뿌리에 충치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대략 75 세 이상 노인 가운데 50 %가 최소 하나의 치근충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래된 크라운이나 치아 충전물(dental filling) 등에 의한 이차 충치(secondary coronal caries)도 이 연령대에 많이 발견됩니다.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전동칫솔 사용, 무알코올 마우스 린스, 높은 불소 함유량의 치약 사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등 적절한 손의 운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에게는 손잡이가 넓고 미끄럽지 않은 전동칫솔이 권장됩니다. 치간의 클리닝은 손잡이가 달린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잇몸의 상태에 따라 일년에 적어도 두 번은 치과에 내원해 스케일링과 검진을 규칙적으로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저희 치과에 내원하시는 노인환자분들 중 단지 치통이 없다는 이유로 몇 년 동안 치과검진을 받지 않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작은 치근충치들이 커져서 신경치료, 심하게는 발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한 아주 오래 전에 크라운을 씌운 치아에 충치가 지속적으로 커져서 결국 부러져서, 부러진 치아와 크라운을 같이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선 발치 후, 임프란트 식립이나 브릿지 크라운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크라운 하나를 교체했어도 될 상황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는 치료로 바뀌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된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따라 치아 건강은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웰컴치과그룹
이주영 원장
(로마린다 치대 졸업)
Korea Town: (213) 381-2827
Irvine: (714) 838-2875
Fullerton: (714) 552-5373

■ 법률 칼럼

601A 면제: 불법입국/불법체류 면제를 통한 영주권 신청 (최근 승인 사례를 중심으로)

▶ 1269호에서 이어집니다

2. 최근의 승인 사례

1) 시민권자 부모님을 두신 A씨의 면제를 통한 영주권 신청

A씨는 애초에 학생으로 입국하셨다가 나중에 신분 유지를 하지 못해 불법체류가 되셨습니다. 부모님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 회복을 원하셨지만 A씨는 결혼을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면제와 시민권자 부모님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우선 A씨는 수년 전에 시민권자 부모님이 시민권자 성인 자녀로 접수해 놓은 I-130 이민 청원서가 있었습니다. 청원서는 이미 승인이 되었고 우선일자가 돌아와 비자센터에서 이민비자 수속이 시작될 수 있는 단계에 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모님의 겪게 되실 극심한 고통을 부모님의 건강상태/재정 상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601A 면제 승인을 받았고 한국으로 출국하여 대사관 영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영주비자를 받았습니다.

2)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B씨

B씨는 오래전 캐나다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시민권자 부인과 오래전 결혼을 했음에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B씨가 오셨을 때는 아직 시민권자 부인이 이민 초청을 신청하지도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우선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민 청원서 신청을 권고 드렸고 약 5개월 후에 청원서 승인을 받고 비자 센터 (NVC)로 케이스가 이관된 것을 확인한 후에 processing을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의 건강 상태 정신적 어려움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면제 승인을 받았고 서울에서 인터뷰를 거쳐 영주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되셨습니다.

3. 나가는 말

601A면제는 아주 많은 시간/노력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트 행정부 하에서 유일하게 승인률이 올라간 이민 케이스입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601A 면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